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철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095 발의연월일: 2024. 7. 22.

발 의 자:이철규·조정훈·박충권

박준태 • 김성원 • 강승규

박성민 • 구자근 • 정희용

김 건 • 유상범 • 이인선

김종양 • 임이자 • 신동욱

정점식 의원(16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소재・부품・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의 소재・부품・장비 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소재・부품・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・개편하는 한편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것에 맞추어 「산업기술혁신 촉진법」의 관련 특별회계의 명칭 변경 및 연장근거조항을 개정하고자 함(안 제37조의4제2항제11호 등).

참고사항

가. 이 법률안은 이철규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 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」

- (의안번호 제2094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- 나. 이 법률안은 「국회법」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 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.

법률 제 호
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4제2항제11호 중 "소재·부품·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"를 "소재·부품·장비경쟁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"로 한다.

법률 제16892호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중 "2 024년 12월 31일"을 "2029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7조의4(산업기술혁신계정의	제37조의4(산업기술혁신계정의
재원과 용도) ① (생 략)	재원과 용도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산업기술혁신계정은 다음 각	②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	
도로 사용한다.	.
1. ~ 10. (생 략)	1. ~ 10. (현행과 같음)
11. 「소재・부품・장비산업 경	11
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	
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68조	
에 따른 소재・부품・장비경	<u>소재·부품·장비경쟁</u>
<u>쟁력강화특별회계</u> 에의 전출	력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
	<u>별회계</u>
12. (생 략)	12.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16892호 산업기술혁신	법률 제16892호 산업기술혁신
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	촉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
제2조(유효기간) 제37조의4제2항	제2조(유효기간)
제11호의 개정규정은 <u>2024년 12</u>	<u>2029년 12</u>
<u>월 31일</u> 까지 효력을 가진다.	월 31일